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593호 2021. 3. 10.(수)

조례 · 훈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31

회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어학 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 등의 응시료를 1인당 생애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험 응시료를 지원 받으려는 청년은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에 대한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개최

3.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사업
6. 실직청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주 소 (도로명)			
응시현황	시 험 명			
	응 시 일		응 시 료	
신 청 내 용				
신청내용	- 신청금액 : - 계좌번호 : (예금주:)			
첨부서류	- 응시내역 확인 서류 1부 (응시결과표, 취득 자격증 사본 등) -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수영구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입일자 포함)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기존 지원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총 지원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제안이유

청년의 정의 부분을 개정하고, 청년의 역량개발 및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 개정(제2조)

나.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신설
(제12조제4항, 제5항)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항 신설
(제13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 하여야 하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6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발명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발명진흥법」 제17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6조)
- 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6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 3. 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제3조)
- 다. 의사상자 지원 및 영예의 존중(제4조~제5조)
- 라. 지원신청(제6조)
- 마. 준용 등(제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

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멘토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멘토링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방법
3. 멘토링 수행 절차
4. 멘토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멘토링 사업 성과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보호종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들의 실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단을 운영하여 정서적,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5.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있는 주민

제10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제4조~제5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제6조~제7조)
- 라. 지도·감독 및 홍보(제8조)
- 마.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제9조)
- 바. 비용지원(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

③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운영요원은 관련 공무원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

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제12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13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14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5조제3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15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1. 제15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구청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8조)
- 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제9조~제10조)
- 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업무범위(제11조~제13조)
- 마.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제14조)
- 바.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자료의 제출(제15조~제16조)
- 사. 지도감독, 시행규칙(제17조~제18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공무직 운영 규정

제1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4조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6조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9조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지 서약서 내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표 항목란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허가건축 단속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 제안이유

현행의 환경미화원을 지칭하는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 뿐 아니라 다양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반영하고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부분 중 “영상정보자원의”를 “영상정보의”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며,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비상시에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를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야간 및 주말에는”을 “시간에는”으로 하고,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관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1항 중 “전문요원에게”를 “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2항은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운영 실적이 저조한 CCTV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중복·불합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불합치 조항 정비(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2항)
- 나. CCTV 운영위원회 규정 삭제(제13조)
- 다. 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조항 삭제(제14조)